



제 3 5 2 회 임 시 회
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
2 0 2 5 . 2 . 4 . (화)

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886
제안일자	2025.1.10.
회부일자	2025.1.14.

문화환경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기후환경국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(안 제5조)
-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(안 제6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선정을 규정(안 제7조~제8조)
- 비용의 지원을 규정(안 제9조)

- 시·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규정(안 제10조)

3. 관련법령 등

- 가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4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법제심사: 검토의견 반영(예산입법담당관)
- 나.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민자활성화과)
- 다. 부패영향평가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- 라. 해당부서: 의견 첨부(환경관리과)
- 마. 예산관련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(환경관리과)

5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방법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나. 예고기간: 2025. 1. 17. ~ 1. 23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-13호)
- 다. 의견제출: 없음

6. 검토의견

- 가. 법적 근거 및 타당성

- 「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 고령 빈곤

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

-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(목적)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나
 - “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” 를 “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” 로 하여 해당 자치법규의 해석 지침이 되는 목적규정에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- 안 제2조(정의)제2호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을 정의하였으나
 - “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” 를 “사업주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” 로 하여 고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
 - “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·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” 을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·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” 으로 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- 안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제1항에서 각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
 - 제3호와 제4호에서 규정된 지원 내용은 중복된 사항으로 제3호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7조(지원대상)에서 지원대상을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
 - “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인”을 “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된 재활용품 수집인”으로 하여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9조(비용의 지원)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
 -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”로 하여 상황에 따라서 장비의 직접 지원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- 「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유관 기관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, 시의적절하며 입법취지나 필요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실과	주요내용 (조항)	검 토 의 견
환경 관리과	총괄	<p>재활용품 수집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 동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조례 제정전에 충분한 시군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</p> <p>또한 동 조례에서는 시군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</p>
	제2조제1항	<p>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에는 폐지, 고철 등 외에 소형 가전제품, 이차 전지, 전자제품, 폐타이어, 자동차부품, 식용유 등 다양하여 동 조례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</p>
	제2조제2항	<p>재활용품 수집인의 정의 중 ‘생계를 위해’ 라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.</p>
	제7조, 제9조	<p>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‘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’에 해당하여야 하나,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는 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함.</p>
	제8조	<p>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 방법은 제시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대상자 선정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,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.</p> <p>지원대상자 중 저소득층, 노인, 장애인 등은 복지 정책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며,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지원이 있는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임.</p>

□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재활용가능자원”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(收去)된 물건과 부산물(副産物) 중 재사용·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(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(廢熱)을 포함하되,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